



아프리카돼지열병
중앙사고수습본부

보도참고자료

정부혁신
보다 나은



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총괄대응팀 팀장 박찬용(044-201-7491), 사무관 심은수(7492) /
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/ 제공일:10월 27일(9매)

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 추진

- ◇ 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동서 광역울타리 설치 추진
- ◇ 10월 28일부터 완충지역 5개 시·군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.
- 이는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,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.
 - 이번 강화방안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, 양돈농가는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,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.
- 긴급대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첫째,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,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.

-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나,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.
-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뉘,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'과주·연천', '철원 동부' 권역과 그 사이의 '철원 서부'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 설치하고, 이후 나머지 '강원 동북부(화천·양구·인제·고성)' 권역도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.
- 광역 울타리는 임진강, 한탄강과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, 시설물 설치 최소화·가속화하면서 멧돼지의 이동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.

※ 우선 설치되는 3개 권역의 경우, 약 200km 대상 구간 중 하천, 도로 등 지형지물 활용 구간을 제외하면 약 100km 구간에 설치 필요 예상

- ② 둘째, 그간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되었던 완충지역*의 5개 시·군의 경우 10월 28일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한다.

* (완충지역 5개 시·군) 포천, 양주, 동두천, 고양, 화천

- 양돈농가에서 추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가운데 바이러스 잠복기 종료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, 멧돼지 이동성이 증가하는 번식기에 앞서 개체수를 줄이고,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, 그간의 총기포획 금지*를 풀고 전략적 총기포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(9.16)한 이후, 주변 멧돼지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 시·군과 인접한 5개 시·군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총기포획을 금지하되 포획틀, 포획트랩 집중 설치

- 완충지역 내에서의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하여 북쪽에 있는 양돈농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,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과정에서 멧돼지가 남하하지 않도록 후방의 1차 차단지역에 미리 집중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있다(10.26~).
- 총기포획 과정에서는 멧돼지 이동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준사격, 미끼유인 방식, 수렵견 투입 최소화 등을 적용하고,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·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지난 10월 26일부터 1차 차단지역부터 집중포획이 진행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문자통보, 현수막, 마을방송 등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도 추진되고 있다.
- 11월 3일부터는 경계지역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차단지역을 완충지역 북단으로 끌어 올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사이에 저지선을 확보한 후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, 이 경우에도 남에서 북으로의 포획 등 기본원칙은 유지된다.

<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및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 >



- * 광역울타리 설치 위치(흰색 실선 및 점선)
- *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(발생지역 남단의 붉은색 실선)

- ③ 셋째, 발생지역*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11월 6일까지 완료한 후,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.

* (발생지역) 강화, 김포, 파주, 연천, 철원

- 그간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,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11월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※ (1차 울타리) 연천 4, 철원 1, 파주 1 등 6개소 설치 완료(10.17~24),

(2차 울타리) 연천 3, 철원 1, 파주 1 등 5개소 설치(10.23~11.6 예정)

- 총기포획은 집중사냥지역*의 외곽에서 내부 순으로 수렵권 제한,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되,

* 「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」 상 발생지점을 포함한 약 300km² 면적구간
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세부적인 포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
- 한편,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제외하고 이뤄졌던 민통선 내 민관군 합동포획은 2차 울타리 설치에 따라 전면 허용하되, 종전과 같이 멧돼지 이동유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해, 10월 28일부터 환경부·산림청 합동으로 3주간 매일 총 440명*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촘촘하게 수색할 계획이다.

* 환경부 92명, 산림청 348명

- 한편,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양양주동두천·포천·철원(사육돼지 완충지역)과 강원 북부 지역으로 남하하거나 동진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.
- 대상 지역 전체 363개 농가에 대한 울타리를 점검하고, 멧돼지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야생멧돼지의 양돈농장 침입을 차단한다.
- 또한 군 제독차, 지자체·농협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완충지역과 발생지역간, 완충지역과 경기남부간 연결도로를 대대적으로 소독한다.
- 지역 내 하천주변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고, 농장 내외부·진입로 등도 일 2회 소독한다.
- 완충지역과 강원북부를 운행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도 계속 유지하여 차량이동을 통한 전파도 철저히 차단한다.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일 상황점검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강화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.

- 붙임 1. 멧돼지 관리지역 조정안
 2. 긴급대책 강화 전/후 비교표
 3. 질의응답. 끝.

< 긴급대책에 따른 멧돼지 관리지역 현행안 >



<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및 1차 차단지역 변경안 >



붙임 2

긴급대책 강화 전/후 비교표

구 분		기 준	강 화
민통선 이북	DMZ 접경부	● 일부지역 민관군 합동포획 - 감염지점과 인접한 파주·연천, 철원·화천 일부지역은 제외	● 소지역 합동포획 - 감염지점 인접지역도 2차 울타리 완료후 총기포획
발생 지역	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	● 감염부 주변 울타리 설치 - 2단(1차: 반경 1.3km, 2차: 반경 3km 내외) 설치	(좌 동)
		(신 설)	● 동-서 광역 울타리 설치 - ⅰ) 파주·연천, ⅱ) 철원 서부, ⅲ) 철원 동부, ⅳ) 강원 동북부 총 4개 권역
		● 포획틀·트랩 전용(專用), 총기포획 금지	● 포획틀·트랩 병행하여, 총기포획 제한적 허용 - 별도의 세부포획계획 수립
완충 지역	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	● 환경부 중심 폐사체 예찰^{주)} - 초기 22명 → 92명 확대	● 환경부-산림청(산불진화대) 합동 폐사체 정밀수색^{주)} - 총 440명 규모: 환경부 92명, 산림청 348명
		● 포획틀·트랩 전용(專用), 총기포획 금지	● 포획틀·트랩 병행하여, 총기포획 전략적 허용 i) 최남단(현행 1차 차단지역) 총기포획 개시 ii) 남에서 북 방향, 순차적 확대(농가주변 → 전역)
		● (1차 차단) 완충지역-경계지역 접경부 - 시·군 행정구역 기준 - 집중 총기포획	● (1차 차단) 발생지역-완충지역 접경부로 상향 - 도로·지형 기준 - 집중 총기포획
경계 지역	의정부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	● (2차 차단) 경계지역 하단 폭 2km - 집중 총기포획	(좌 동)
		● (경계지역내) 포획단 확대, 무료수렵장 개설 등 - 단 의정부는 무료수렵장 제외(도시지역)	(좌 동)
		● 사전포획 조치 - 피해신고 없이도 포획	(좌 동)
그 외			(좌 동)

주: 국립공원 일대 31명 포함 시, 기존 123명 → 강화 471명

1. 강원북부의 경우, 광역울타리 설치 이후에 기존 경계 지역과 1차 차단지역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?

- 광역울타리 설치 이후에는, 광역울타리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경계지역, 차단지역 등 멧돼지 관리지역 및 지역별 관리방안을 재조정 할 계획임

< 광역 울타리 설치 예시 >



펜스 예시



가시철조망 예시

2. 포획한 멧돼지에 대한 자가소비가 가능한지? 자가소비를 금지한다면 포획한 멧돼지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?

- 자가소비로 인해 감염된 개체가 유통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, 원칙적으로 전 지역 자가소비 금지조치를 추진 중이며, 현재 발생·완충지역(10개 시·군) 자가소비 금지조치 중(10.3~)

-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를 우선 금지하되(10.28), 향후 포획포상금 등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자가소비 금지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(별도 문서 통지 시까지)
- 자가소비 금지에 따라, 포획한 멧돼지 사체는 시·군별로 별도의 사체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, 「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」과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(10.25)에 따른 사체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계획임
- * 매립, 소각, FRP 저장조 활용, 렌더링(Rendering) 등